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4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1·2차 시험으로 구분된 감정평가사 시험의 응시료 납부 규정이 분리되었으나 반환 규정은 분리되지 않아 2차 시험을 취소하는 응시자에게는 수수료 반환 규정이 불비하며,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및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이 감정평가사 실무훈련 근무지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그간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감정평가사 시험의 응시료 반환규정을 정비하여 2차 시험을 취소하는 응시자에게도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- 나. 한국부동산원을 감정평가사 실무훈련과정의 현장실습근무지에 추가하여 감정평가사의 교육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함

### 3. 의견제출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부동산평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[www.molit.go.kr](http://www.molit.go.kr)> 정보마당>법령정보>입법예고란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,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
- 전화: 044-201-3426, 팩스 : 044-201-5536

##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중 “제1차 시험”을 각각 “시험”으로 한다.  
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근무지는 한국부동산원, 협회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로 한다. 다만, 한국부동산원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, 부동산투자회사의 재산 검사,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, 보상 및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, 재건축부담금 검증 등 감정평가와 연관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실무수습에 대한 적용례)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행하는 실무수습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의 반환 사유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 터 <u>제1차 시험</u> 시행일 20일 전 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: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 의 60</p> <p>5. <u>제1차 시험</u> 시행일 19일 전부 터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 수를 취소한 경우: 납부한 수 수료의 100분의 50</p> <p>제12조(실무수습의 시행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<u>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근무 지는 협회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로 한다.</u></p>	<p>제8조(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 <u>시험</u> ----- ----- ----- ---</p> <p>5. <u>시험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12조(실무수습의 시행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근무 지는 한국부동산원, 협회 및 감 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로 한다. 다만, 한국부동산원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, 부동산투자회 사의 재산 검사, 감정평가 타당</u></p>

<p>⑤ · ⑥ (생략)</p>	<p><u>성조사 및 표본조사, 보상 및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, 재건축부담금 검증 등 감정평가와 연관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.</u></p> <p>⑤ · ⑥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	--